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04 발의연월일: 2024. 11. 14.

발 의 자: 김형동 • 임이자 • 김미애

박정하・김소희・조지연

유용원 • 김위상 • 우재준

김상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및 유독물 등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고의로 불법배출할 경우에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같은 환경범죄 행위라도 「대기환경보전법」등을 적용받는 배출시설에서는 과징금 부과대상이었으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은 시설일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법률간 형평성 문제가 있고,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의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과 같이 위해성이큼에도 이를 고의로 불법배출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등 법률의 미비점이 있음

이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시설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에 대

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또한, 그 밖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 환경부장관이 양도인의 처분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에 대해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바목 중 "제25조제1항을"을 "제25조제9항제4호·제5호를"로 하며,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에 바목과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아.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 파.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제14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 바.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 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나목, 사목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배출시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아목까지의"를 "아목까지 또는 타목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제10항"을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3조제1항, 제41조제1항 또는 제46조제2항"을 "제23조제1항 또는 제4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허가나 변경허가를"을 "허가나 변경허가 또는 승인이나 변경승인을"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제31 조제1항, 제32조제1호
 - 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 2항
 - 6.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 14조제3항을 위반한 자
-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사업자가 불법배출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자(이하 "양도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라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 등"이라 한다)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등에 행정처분의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합병한 때에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양수인 등이 양수・상속 또는 합병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행정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양도인 등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양수인 등이 그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종류,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의2제1항제19호 중 "제37조의3 및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를 "제37조의3,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40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9호 중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를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및 제60조"로 한다.

30.「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중처벌이나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이나 과징금 규정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u><신 설></u>	아. 「잔류성오염물질관리
	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잔
	<u>류성오염물질</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하수도법」제19조제2항,	벼
제39조제1항, 제43조제2항	
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u>제25조제1항을</u> 위	<u>제25조제9항제4호·제5</u>
반하는 행위	호를
사. ~ 타. (생 략)	사. ~ 타. (현행과 같음)
<u><신 설></u>	파.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는
	<u>행위</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u><신 설></u>	바.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
	<u>설</u>

<신 설>

제12조(과징금) ① (생 략)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물질을 불법배출(제2 조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행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한자 가. ~ 라. (생 략)
- 2. (생략)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 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 39조제1항, 제44조제10항 나. ~ 다. (생 략) <신 설>
- 3.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41조제1항 또는 제46 조제2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 하여 서류나 자료를 거짓, 그 기록 또는 제출하면서 인체급

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 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 호 나목, 사목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배출시설

제12조(과징금) ① (현행과 같음)

- ---- 아목까지 또는 타목의

가. ~ 라. (현행과 같음)

- 2. (현행과 같음)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 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 39조제1항, 제44조제13항
 - 나. ~ 다. (현행과 같음)
 - 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 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 1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1호
- 3.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제1항 또는 제46조제2항 중 어 느 하나를 위반하여 서류나 자 료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법으로 작성, 기록 또는 제출 하면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불 법배출한 자

- 4. (생략)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고 의로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ㅣ <u>가를</u>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나 <u>가 또는 승인이나 변경승인을</u>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 치 또는 변경한 배출시설을 운 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가. ~ 라. (생 략) <신 설>

<신 설>

업자가 불법배출시설을 양도하 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 해성물질을 불법배출한 자

- 4. (현행과 같음)
- ----- <u>허가나</u> 변경허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 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1 항 또는 제2항

- 6.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제2 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 여 같은 법 제14조제3항을 위 반한 자
- 제14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사 제14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사업자가 불법배출시설을 양도 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 | 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의 사업자에 대하여 제13조에 종전의 사업자(이하 "양도인

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 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된다.

<신 설>

따라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양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3조 에 따라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간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 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 등"이라 한다)에 승계되며. 행정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는 양수인 등에 행정처분의 절 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 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양수인 등이 양수・상속 또 는 합병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 는지 여부를 양도인 등에게 확 인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양 수인 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종류, 사유, 진 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의2(환경감시관) ① (생 략)

- 1. ~ 18. (생략)
- 19. 「지하수법」 제37조, 제37 19. 「지하수법」 제37조, 제37 조의2, 제37조의3 및 제38조부 터 제40조까지
- 20. ~ 29. (생 략)
- 3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 한 특별법」제40조부터 제46 조까지
- 31. ~ 38. (생략)
- 3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 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40. ~ 45. (생략)

제15조의2(환경감시관) ① (현행과 같음)

- 1. ~ 18. (현행과 같음)
- 조의2, 제37조의3,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40조의2
- 20. ~ 29. (현행과 같음)
- 3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45조 부터 제49조까지
- 31. ~ 38. (현행과 같음)
- 3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 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 조의2, 제59조 및 제60조 40. ~ 45. (현행과 같음)